

製造物責任에 관한 研究

이상정
법학과

〈요 약〉

本稿는 製造物責任에 관한 研究이다. 종래의 과실책임에 기초한 불법행위법만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경제구조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적절히 구제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결함책임에 기초한 새로운 법의 제정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논한 후, 각국의 입법현황과 새로운법에 포함될 주요내용인 제조물, 결함, 입증책임, 제조물책임의 주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Lee, Sang-Jeong
dept. of law

〈Abstrac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The present tort law based on the fault liability is not adequate for the relief of consumer's damage. For the adequate relief of the consumer's damage caused by the defective product, this paper propose to make a *sui generis* "Product Liability Act" based on the defect liability (strict liabilit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iscusses the need to make a product liability act, and examine the present lawmaking situation of the world, and study the major issu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when enactment.

第 1 節 序 說

1. 序言

製造物責任¹⁾이란 製造物의 缺陷에 기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製造物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의미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급속한 工業化, 産業化, 都市化로 인하여 각종의 商品이 쏟아져 나와 매우 편리한 生活을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商品들이 가지고 있는 缺陷으로 인하여 消費者나 利用者 또는 제3자가 심한 경우에는 生命을 잃기도 하고 또는 傷害나 재산적인 被害를 입는 경우가 빈번해 졌다. 이러한 損害는 과거 民法이 예정했던 古典的 被害²⁾에서 被害發生의 普遍化, 被害의 廣範化, 責任의 不明確化, 立場의 非對等化 등의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유형의 構造的 被害로 轉換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製造物로부터 받는 被害를 構造的 被害라고도 한다.³⁾

그런데 이러한 製造物의 缺陷으로부터 오는 책임도 민사상은 손해의 배상책임문제이므로 現行법상 피해자가 의거할 수 있는 법리는 契約法이거나 不法行爲法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製品 유통경로를 생각하면 피해자가 契約責任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이례에 속하며 주로 不法行爲法에 근거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밖에 없다. 不法行爲規定에 근거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 등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製造物責任訴訟에 있어서 製造者의 過失이나 因果關係를 입증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학설이나 판례는 피해자인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기술을 동원하였다. 예컨대 過失의 사실추정, 주의의무의 엄격화, 공작물책임에 관한 민법 제758조의 유추적용 등이 그것이다.⁴⁾ 그러나 이들 이론은 우리가 過失責任主義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안출된 과도기적 이론인 뿐이며, 오늘날의 대부분의 立法(이나 立法案)은 過失概念과는 무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예컨대 製造物責任에 관한 1979년 美國의 統一製造物責任模範法(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유럽 共同體立法指針과 그에 따른 일련의 입법들, 1982년 2월 19일 제 110 회 임시국회에 제출된 製造物責任法案, 최근 성립을 본 일본의 製造物責任法 등, 대부분의 입법례는 無過失責任(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의 原則을 채택하고 있다.

2. 無過失責任法理의 必要性和 有用性

製品의 缺陷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종래의 판례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 과정을 보면 일단 製品의 缺陷만 인정되면 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다양한 논리를 구성하여 또 기업은 기꺼이 自社 製品의 缺陷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過失有無를 따지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過失有無를 따지는 것은 법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지 이러한 규정이 크게 규범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즉 自社 製品의 缺陷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상 過失을 要件으로 책임을

* 본 연구는 1994년도 학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입니다.

1) 責任主體의 관점에서 '製造者 責任', '生産者 責任'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責任負擔의 主體가 生産者나 제조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으며, 製造物과 동일한 개념으로 '生産物責任'이라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 李銀榮, 債權各論, 박영사, 1989, p. 669.

2) 古典的 被害란 製造者와 消費者가 대등한 거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韓濤熙, "製造物責任에 관한 考察", 『司法行政』, 사법행정학회, 11977. 8, pp. 38-39.

4) 보다 자세한 것은 황적인/이상정편, 소비자보호법, 대하출판사, 134면 이하 참조.

지우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에게 「그래 缺陷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缺陷이 나의 過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사업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過失有無를 따져 책임유무를 결정하는 범구조는 이미 시대에 뒤 떨어진 것이며, 새로운 문제상황을 직절히 규율할 수도 없다.

특히 오늘날의 상품 생산구조를 생각하면 책임발생에 있어서 過失은 문제가 될 수가 없다. 不法行爲法 등이 過失責任主義를 채택한 이유는 사회생활상 필요한 주의의무만을 다 하면 불법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注意義務와 結果發生과의 사이에 크게 연관관계가 없거나 주의를 다하는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피해는 손실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달리 책임요건을 규정하여야 하며, 過失을 책임요건으로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주의의무만 다하면 불행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제조자가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예컨대 당시의 기술수준으로는 아무리 주의를 하여도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缺陷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 缺陷 자체는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대량생산의 경제체제에 비추어 볼 때 缺陷商品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製造過程上의 缺陷은 품질검사단계에서 발견되었어야 할 缺陷이었다. 그러나 분초를 다투어 쏟아지는 물품에 대해 일일이 품질검사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체제에 비추어 가능할 것인가. 따라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불운에 대해서는 사회가 그 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배상액까지 물건값에 포함된 가격이 진정한 가격이며, 이를 통해 자원의 적정배분에도 도움을 준다.⁵⁾ 그러므로 缺陷商品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그에 대한 배상여부를 제조자의 過失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나라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정립을 통한 해결책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어느정도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적 시야에서 이 문제를 보면 오늘날은 자유무역이 크게 강조되고 있고 공산품은 물론 종래 자유무역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식량 및 서비스까지도 포함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안전여부에 대한 사전규제는 여러가지 무역마찰을 야기한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에 엄격한 책임을 제조자나 수입업자 등에게 묻는 방법 밖에는 없다. 자국에 製造物責任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자국 국민을 외국의 신상품 등의 실험시장으로 방치하는 것과 같다. 또 국내 수출기업은 제외국에서 상당한 製造物責任을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⁷⁾ 그러나 그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못한 製品을 국내에서 팔고 있음에도 법의 공백을 이용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도 諸外國 國民이 받는 정도의 혜택은 받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일본도 아직 법제정을 하지 않았는데

5) 결국 새로운 룰(rule)로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의 위험부담하의 缺陷가능성을 가진 상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는 組合에서 「매도인의 위험부담하의 안전성을 가진 상품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라고 하는 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뿐, 실제로 얼마의 가격의 상승이 일어날지는 기본적으로 시장구조가 경쟁적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의 가격부담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독일 입법이유서에 의하면 製造物責任危險에 대한 제조자의 보험료는 평균판매액의 0.09%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종래 보다 0.02% 상승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수준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았다).

6) 뿐만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민주화의 진행은 행정규제를 협오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적 직접규제의 완화로 인한 소비자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효율적인 사후구제도가 필요하다.

7) 이에 대한 책임사례는, 이상정/朴仁燮, 製造物責任에 관한 研究, 소비자보호원, 1989, 62면, 주 40) 참조. 「AUTO」저널 1995년 9월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차의 약 반 정도가 製品의 缺陷(이나 瑕疵)으로 인해 리콜(recall)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에야 비로소 「공개 리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법제가 제외국에 비해 생산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너무 앞서서 것이 아니냐는 반대론도 있었지만 일본이 법을 제정한 현재는 이러한 반대론도 설득력이 없다. 특히 일본기업의 대도, 不良製品을 만들어 판 기업에 대한 소비자 스스로의 압목적 制裁 등과 우리의 그것을 비교하면 빠른 시일 내에 製造物責任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製造物責任危機⁸⁾의 예를 들어 이에 반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적 현상은 엄격책임이라는 책임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심제, 징벌배상제도, 성공보수제도 등 미국 특유의 사법제도나 사회제도에 원인이 있는 것이며, 엄격책임이라는 책임 구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실로 EC에서 製造物責任法制가 도입된지 5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같은 현상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訴訟件數, 製造 코스트, 保險料, 製品開發意慾, 物價上昇率 등에 있어서 눈에 띄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⁹⁾

근대민법의 기본구조가 대등한 당사자 끼리의 거래를 엄두에 두고 마련된 것인 이상 민법은 더 이상 製造物被害에 대한 규율의 규범으로서 적합한 도구는 아니다. 민법의 기본원칙은 製造物被害 부분에서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民法의 過失責任의 原則을 변경하여 無過失責任原則 내지는 缺陷責任의 原則을 채택하면 ① 救濟의 必要性이 인정되면 被告가 상당한 注意를 다하였다는 證明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過失을 인정하게 되는 過失責任法의 迂廻를 생략할 수 있고 ② 製品의 安全性向上의 刺戟劑가 되며 ③ 消費者는 社會的 코스트까지 반영된 製品의 진정한 價格을 알게 됨으로써 資源의 適正配分에 도움이 되며 ④ 損失의 分散에도 도움을 주며 ⑤ 現代社會의 倫理觀에도 合致한다. 無過失責任은 製造者責任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企業의 創造的 活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事業者와 消費者간의 건전한 去來 慣行의 成立을 촉진하는 것이다.¹⁰⁾

이하 각국의 입법상황을 간단히 언급한 후(제2절), 우리가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제3절).

제 2 節 各國의 立法狀況

1. 아시아

1) 우리나라

외국의 입법례와 입법안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몇 개의 法律案과 법률사안이 제안되었다.¹¹⁾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1975년의 일본 製造物責任法試案 혹은 1985년의 EC지침을 참고로 한 것이며, 無過失責任에 기초한 새로운 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8) 미국에 있어서 製造物責任의 危機(product liability crisis)란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製造物責任保險의 수익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일제히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한다든지 契約의 引受를 거절함에 따라, 보험없이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미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일으킨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후반에도 발생하고 있다.

9)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소비자행정 제1과 편, 逐條解説 製造物責任法, (1994, 상사법무연구회), 24면; 일본 경제기획청 국민생활국 소비자행정 제1과는 1992년 9월 14일부터 24일에 걸쳐 유럽의 「製造物責任制度 導入의 影響」에 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大藏省 인쇄국 1993. 7. 15 발행).

10) 洪天龍, 消費者被害救濟論, 삼영사, pp.109-111.

11) 그 자세한 경과에는 韓瑋熙, 「한국製造物責任法의 입법론적 과제」(한국 재산법학회 제25회 학술대회 발표문), 1면 이하 참조.

2) 일본

일본은 다양한 製品被害의 경험을 기초로 1970년대에는 활발한 製造物責任에 관한 연구가 행하여졌다. 그 결실로서 1975년에는 시안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일시 주춤한 상태이었다. 이러한 상태에 제차 불을 붙인 것은 EC 각국의 製造物責任의 입법화였다. 1990년대로 오면 정부, 학계 주도로 그사이의 연구 성과를 재정리하고 각국 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시작, 마침내 1994년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 製造物責任法을 公布하였다. 동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過失의 有無를 묻지않고 缺陷을 원인으로 하여 제조자 등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3) 중국 : 중국의 민법통칙 제122조에서 「생산물의 품질이 규준에 합격하지 않아 타인의 재산, 인신에 손해를 준 경우는 생산물의 제조자, 판매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한 법으로서 「產品質量法」이 1993. 2. 22 제정, 1993. 9.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은 없다.

4) 대만 : 소비자보호법이 1994. 1. 11 제정되어, 同日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개발위험항변인정여부에 대한 규정 역시 없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도 없다.

5) 필리핀 : 소비자보호법이 1992. 4. 13 제정되어, 1992. 7. 16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에는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의 인정여부에 대한 규정도 없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도 없다.

2. 유럽

2.1 EC(EU)의 여러나라

가) 序言

EC이사회는 1985년 7월 25일 입법지침을 의결하여 1985년 7월 30일 회원국에 公告하였다. 동 지침 제19조에 의하면 회원국은 공고일로부터 늦어도 3년내에 이 지침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令을 제정하도록 규정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지킨 나라는 드물고 많은 나라가 이 시한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가 입법을 완료하였다.

입법지침의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각국의 입법현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나) 指針의 대체적인 내용

① 제1조는 “製造物의 製造者는 그 製造物의 缺陷으로 야기된 損害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한다. 製造者는 歸責事由가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으며, ‘缺陷’이란 정당하게 기대되는 安全性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한다.

② 製造物은 動産에 한정된다(제2조). 不動産은 제외한다. 그러나, 動産의 생산자는 이 동산이 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農業에 의한 自然生産物은 제외되나 세15조 제 1항 a는 포함여부를 회원국에 위임하고 있다.

③ 제3조는 責任者의 範圍를 규정한다.

製造者에는 最終 生産物의 製造者 뿐만 아니라 部品の 生産者, 原料의 生産者도 포함되며 製造者로 행세하는 자도 포함된다.

缺陷商品의 販賣者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製造者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단계의 供給者가 製造者로서 책임진다. 또 輸入業者도 책임진다.

④ 제7조는 製造者가 責任을 면하는 根據를 열거하고 있다.

製造者는 生産物을 流通시킨 경우에만 책임을 지며, 아직 인도되지 않거나, 盜難 당하거나 재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제7조 a).

또 製造者는 製造物을 유통시켰을 때 존재하였던 缺陷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제7조 b). 나아가 製造者는 영업상 生産, 販賣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제7조 c).

⑤ 製造者의 改良이나 革新을 위해, 開發危險에 있어서 缺陷의 存在를 否認한다(제7조 e).

다) 입법의 현황

1) 영국 : 소비자보호법(1987. 5. 15 제정, 1988. 3. 1 시행)에서 製造物責任을 규정한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동일한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은 없다.

2) 그리스 : 部습으로 製造物責任을 인정한다(1988. 3. 13 제정, 1988. 7. 30 시행). 同습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72억 384만 도라쿠마)을 설정하고 있다.

3) 이태리 : 대통령령으로 製造物責任을 인정한다(1988. 5. 24 제정, 1988. 7. 30 시행). 동령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은 없다.

4) 룩셈부르크 : 製造物責任法을 1989. 4. 21 제정, 1989. 5. 2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동법에는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에 관한 규정이 없다.

5) 덴마크 : 製造物責任法을 1989. 6. 7 제정, 1989. 6. 10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은 없다.

6) 포르투갈 : 總理令으로 製造物責任을 인정한다(1989. 11. 6 제정, 1989. 11. 21 시행). 동령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100억 에스쿠-드)이 설정되어 있다.

7) 독일 : 製造物責任法을 1989. 12. 15 제정, 1990.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

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1억 6000만 마르크).

8) 네덜란드 : 民法을 개정하여(1990. 9. 13 개정, 1990. 11. 1 시행) 製造物責任을 인정한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은 없다.

9) 벨기에 : 製造物責任法을 1991. 2. 15 제정, 1991. 4.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은 없다.

10) 아일랜드 : 製造物責任法 1991. 12. 4 제정, 1991. 12. 16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은 없다.

11) 프랑스 : 민법을 개정하여 製造物責任을 인정할 예정이나 이제까지도 원칙적으로 契約責任法理를 통하여 製造物責任을 인정하여 왔다. 특히 직업적 매도인이 숨은 하자물 안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無過失責任을 지우고 최종 매수인이 契約의 상대방인 매도인 및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조자를 상대로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하는 직접소권을 인정한다. 이 점에서 제조자 책임은 매우 엄격하다.¹²⁾

12) 스페인 : 製造物責任法을 1994. 7. 6 제정, 1994. 7. 8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150억 페세타).

2.2 EC 이외의 유럽국가들

1) 오스트리아 : 1988. 1. 21 製造物責任法을 제정, 1988. 7.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은 없다.

2) 노르웨이 : 1988. 12. 23 製造物責任法을 제정, 1989.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도 없다.

3) 핀란드 : 1990. 9. 17. 製造物責任法을 제정, 1991. 9.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도 적용되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도 없다.

4) 아이슬란드 : 1991. 3. 20 製造物責任法을 제정, 1989.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도 적용되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이 있다(7000만 ECU 상당).

12) 현재까지의 규율상황은, 이상정/박인섭, 前掲書, 43면 이하 참조.

5) 스웨덴 : 1991. 12. 17 製造物責任法을 제정, 1993.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은 없다.

6) 스위스 : 1992. 10. 9 製造物責任法을 제정, 1994.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도 없다.

7) 리히텐슈타인 : 1993. 1. 14. 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하여, 1994.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은 없다.

3. 美 洲

1) 美 國

가) 序 言

미국에서도 製造物責任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방향은 제 외국과는 정 반대이다. 즉 두번의 製造物責任危機에 직면했던 미국은 어떻게 하면 기업의 부담을 줄여, 1970년대 1980년대에 직면했던 사태의 야기를 예방할 것인가에 주안을 두고 있다. 현재 연방 및 주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나) 연방차원

미국은 製造物에 있어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이익을 공평하게 함과 아울러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책임체계의 연방레벨에서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1979년의 統一製造物責任모델法은 주법에 대한 제안으로서의 의미밖에 없었으나 그 영향을 받은 1980년 이후는 연방의회에서 직접 규범력을 가진 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102회 국회에서 전 상원의원 카스텐에 의해 제안된 상원 640호, 製造物責任公正法案(S. 640, Product Liability Fairness Bill) 이다. 이 법안은 부시정권의 강한 지지를 받아 상원 본회의에도 상정되었다. 그러나 동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결국 폐안되었다.¹³⁾ 그 후에도 103회 국회에 유사한 법안¹⁴⁾이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의 전망은 밝지 않다.¹⁵⁾

다) 리스테인먼트의 개정

1992년 6월, 미국 법률가협회에 의해 2명의 보고자, 20명의 어드바이서, 130명의 자문위원이 임명되어 不法行爲法의 製造物責任에 관한 개정작업이 개시되었다. 그 약 1년 후 제 1부 제1차 초고가 발표되었다. 1993년에 발표된 草稿는 1부의 것으로서 責任原理에 관한 부분, 缺陷, 因果關係, 抗辯 등에 관한 7개조에 걸쳐 있다. 그러나 앞으로 2부, 3부의 草稿

13) 그 주도적 제창자인 카스텐씨도 그 후 행해진 상원선거에 낙선되었고, 그 낙선에는 製造物責任에 대한 그의 태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14) 제조자 이외의 판매자의 責任을 過失責任으로 함과 동시에 즉결판결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등으로 분쟁처리코스트를 억제하며, 징벌적 배상, 책임기간 등에 대한 연방차원에서의 기준을 통일하는 것 등이다.

15) 그 이유에 대해서는, 川口康裕, 米國の製造物責任制度について, シュリスト 1035號, 1993. 12, 86면 참조.

가 발표되고 검토될 예정으로 있으며, 완성까지는 최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스테이트먼트는 재판의 경향을 학문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새로운 법리의 도입으로 재판의 현실을 변화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실무자들은 이러한 리스테이트먼트의 개정보다는 연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한다.

라) 주차원에서의 不法行爲法の 改正

聯邦法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는 製造物責任法제도 주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알려져 있으므로 詳細는 略한다.¹⁶⁾

2) 브라질 : 1990. 9. 11 소비자보호법을 제정, 1992. 3. 11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개발위험항변의 인정여부에 대한 규정도 없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도 없다.

4. 濠洲

사업행위법을 개정하여(1992. 7. 9.성립, 同日施行) 製造物責任을 인정한다. 동법은 미가공농산물이나 수렵물에 적용하지 않으며,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한다. 同一 缺陷製造物에 기인한 생명 및 신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한도액도 없다.

5. 小 結

이상 간단히 세계적 입법동향을 살펴보았다. 製造物責任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不法行爲規定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하거나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발전을 본 製造物責任의 法理는 이제 세계 각국에 영향을 주어 적어도 공업화된 나라에서는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새로운 틀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하지 아니한 나라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추세가 이러하다면 세계화·국제화를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도 시급히 새로운 틀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새로운 틀의 제정시 포함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본다.

第 3 節 새로운 法制定時 포함되어야 할 主要 內容

1. 序 言

製造物責任을 過失責任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製造物責任이란 교통사고나 의료과오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加害類型에 불과하나 過失責任으로부터 독립된 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製造物」의 「缺陷」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하나의 고유한 책임유형이다. 그러므로 製造物責任法 제정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製造物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缺陷이

16) 이에 대해서는, 이상정/박인섭, 前掲書, 28면 이하 및 강창경/최병록/박희주, 製造物責任法の 제정에 관한 연구, 1994, 소비자보호원, 119면 이하 참조.

란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前者는 製造物責任法の 적용범위를, 後者는 製造物責任의 성립요건을 나타낸다. 그밖에도 검토되어야 할 주요 문제로는 책임의 주체인 製造者, 立證責任의 緩和와 관련된 缺陷 및 因果關係의 推定與否, 時效期間 등 기간의 제한여부, 損害의 範圍 및 懲罰賠償制度의 認定與否, 賠償履行確保措置, 製造物責任訴訟의 特則 등이다. 本稿에서는 주로 실제법상의 문제에만 언급하며, 이행확보상의 문제¹⁷⁾나 절차법상의 문제¹⁸⁾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2. 製造物

(가) 製造物의 概念

제2차 不法行爲法 리스태이트먼트 제402조 A는 製造物責任의 客體로 되는 製造物에 대해서 단순히 모든 製造物(any product)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① 사람이 消費하는 食品이나 기타 人體에 직접 사용되는 製造物 ② 最終 使用者나 消費者에게 도달될 것을 예상하여 販賣한 모든 物件 ③ 動物의 먹이나 제조제와 같이 利用者의 土地나 動産에 物理的 被害를 끼치는 物件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製造物 속에 動産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문제는 不動産이나, 農産物, 無體物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이다.

(나) 부동산, 농산물, 소프트웨어

立法的으로는 製造物에 不動産을 包攝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消費者被害救濟의 必要性도 있으나, 그것은 건축한 자의 시공상의 過誤나 缺陷 있는 物件을 使用하여 建築한 자의 자재 선택상의 過誤 혹은 缺陷 있는 物件을 供給한 자의 責任(製造物責任)으로 解決이 가능하다고 보아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듯하다.

또 輸入 農産物 被害로부터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해서는 製造物에 제1차 農産物을 包含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재까지는 農民의 危險分散能力 및 賠償能力不足, 農産物의 경우 責任 所在의 不分明, 大多數 國家에서 消極的인 立場으로 비추어 이를 제외하고, 原因物質에 대한 事前規制를 통하여 消費者의 安全을 확보하는 것이 效率的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요리책에 기술된 料理法이나 물건 만드는 방법 등과 같은 단순한 情報에까지 無過失責任을 擴大할 必要는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었다.¹⁹⁾

(다) 각국의 입법례

EC지침에 의하면 製造物은 動産에 한정되 이에 電氣가 포함된다(제2조). 不動産은 제외한다. 그러나, 動産의 생산자는 이 動産이 다른 動産 또는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원칙적으로 農業에 의한 自然 生産物은 제외되나 제15조 제1항 a는 포함여부를 회원국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을 포함시키고 있는 입법은 소수이며, 현재는 룩셈부르크, 프랑스 정도이다.²⁰⁾ 이에 대해 EFTA국가에서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모두 농산물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고 있다.

17) 이에 대해서는 이상정/박인섭, 上揭書, 95면 이하 참조.

18) 이에 대해서는 上揭書, 115면 이하 참조.

19) 拙稿, “製造物責任法の 制定方向”, (誠軒黃迪仁博士華甲記念)「損害賠償法の 諸問題」, 박영사, 1990, pp. 481-483.

20) 프랑스에서도 당초의 초안은 적용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기존의 민법의 적용이 긍정된 이상 製造物責任法(안)에서 제외해 보아도 의미가 없으므로 법률안에서는 이들에게도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최근 제정된 일본법은 “이 법률에서 「製造物」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고 하여 부동산 및 농산물을 제외시키고 있다.

(라) 소결

향후 농산물의 자유무역경향에 비추어 또 사전규제가 무역장벽으로서 무역분쟁을 일으킬 염려에 비추어 이에 대해서도 적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오늘날 많은 製造物(특히 家電製品이나 自動車 등)에 ROM의 형태로 다수의 소프트웨어가 제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잘못이 있어 결과적으로 人命被害나 製品事故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품을 부품인 製造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부동산을 제외한 농산물, 소프트웨어도 製造物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缺陷

(가) 缺陷의 의의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缺陷으로 볼 것인가이다. 먼저 근접한 개념과의 차이를 밝혀 본다.

i) 缺陷과 瑕疵

缺陷이란 상품이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이며 민법 제580조 등의 하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통상 製造物의 흠을 製造物의 商品性에 의하는 것(製造物의 性質이나 品質이 標準이 아닌 것)과 製造物의 安全性에 의하는 것(製造物의 危險性)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화면이 잘 나오지 아니하는 텔레비전은 瑕疵있는 텔레비전이며 폭발하는 텔레비전은 缺陷있는 텔레비전이다. 그러므로 前者에서 문제가 된 損害는 商品의 價値減少, 完全物로 교환받기 위하여 들이간 교통비, 商品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不利益 등 당해 瑕疵로 인한 直接損害인데 반해서, 後者에서 문제가 된 損害는 完全物의 履行利益을 초과하여 利用者의 身體나 기타 財産에 발생한 損害, 즉 缺陷에 의해 야기된 擴大損害이다.²¹⁾

ii) 缺陷과 過失

過失도 缺陷도 사고회피의 관점에서 보아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나 행위의 속성인 過失의 판단에서는 행위자의 심리상태나 능력을 고려하는데 반해 물의 정상인 缺陷을 판단하는 때에는 그러한 행위자에 관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過失의 注意義務가 客觀化·抽象化되면 이러한 차이는 없게 된다.

(나) 缺陷의 類型

i) 設計上の 缺陷(Konstruktionsfehler)

이는 주로 製造者가 기획결정한 商品의 품질명세서에서 내재하는 缺陷이며 商品의 生産, 販賣以前에 全製品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 缺陷의 유무에 관하여는 瑕疵에 의하여 직접 야기된 위험 이외에 제2차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충돌사고의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어떤 상품이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에 확대사용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商品의 安

21) 이상정·朴仁燮, 前掲書, p. 4.

全性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設計上의 缺陷이 문제될 餘地가 있다. 왜냐하면 ‘社會的 品質概念’에 대응한 디자인 缺陷에 있어서는 消費者가 가지는 安全性에 대한 합리적 期待와 信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ii) 製造 또는 管理上의 缺陷(Fabrikationsfehler)

이는 製造하거나 管理하는 단계에서의 人的, 技術的 懈怠에 기인하는 것이다. 현대기업에서는 品質管理가 경제성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는 이상, 일정한 瑕疵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며, 이러한 缺陷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문이 없다.

iii) 指示上의 缺陷(Instruktionsfehler)

商品의 安全性에서 보아 製造者가 消費者에게 주어야 할 品質情報를 주지 아니하거나 혹은 주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消費者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문제된다. 또한 製造者로부터 말단의 판매업자 이외의 제3자가 表示에 關與한 경우(제3자의 Test 성적), 그 제3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iv) 開發上의 缺陷(Entwicklungsfehler, 開發危險)

이는 製造時의 科學의 발달수준에 의하면 當該製品은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사고시 또는 손해발생시 이후의 과학수준에 의하면 위험 내지 缺陷이 있다고 하는 경우의 책임문제이다. 개발도상의 缺陷에 대하여는 예견이나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製造者의 責任을 追及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過失責任의 發想이며, 無過失責任에 기초하는 한 製造者는 개발상의 위험이라는 主張이나 立證으로서 免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할 여지를 두고 있는 EC 立法 指針의 例나 1982년 베사다 대 맨빌 사건²²⁾의 부당성을 예로 들어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면 자칫 消費者가 시험용 도구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또 개발위험의 항변이란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으로도 缺陷을 인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항변이므로²³⁾ 판정하기가 극히 곤란하다. 단, 技術革新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製造者에게 도의적 비난 요소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一定한 要件하에 損害賠償額의 減額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²⁴⁾ 또 缺陷判斷의 基準으로서 위험효용기준에 의거하면 크게 부당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리라 본다. 법안에 따라서는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있다.²⁵⁾

22) Beshada v. Johns-Manville Products Corp. 447 A.2d 539; CCH 9344 (N.J. Supreme Court 1982) : 石綿 제조상의 開發危險抗辯을 棄却. 同會社는 그 후 과산신청을 하였다.

23) 따라서 일국의 기술수준 혹은 동업자도 모르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C지침이 개발위험의 항변을 각국이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면책이 되는 것은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으로도 결함을 인식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의 면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EC위원회는 1987년 영국소비자보호법 제4조 1항 (e)호가 「동일제품제조업자, 즉 同業他社 수준의 지식으로도 결함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EC지침 위반으로 보며, 경고 후 3개월 이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EC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한 바 있다(김해균, 「EC의 생산물배상책임」, 손해보험, 89.9, 53면 참조). 이에 대해 영국정부는 지침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며,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加藤雅信편, 製造物責任法總覽, 日本상사법무연구회, 287면).

24) 前掲 拙稿, pp. 478-479 및 本稿 後述 7. 다) 참조.

25) 加藤雅信 편, 전거서, 41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製造物의 개발이 製造物의 성격상 장래 세대의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
- 2. 製造物의 개발이 생활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며, 또 피해의 성격, 정도를 생각해 보아도 상당한 것일 것.

(다) 缺陷與否의 判斷基準

i) 표준일탈기준

缺陷의 意味에 대해서는 종래 메이커가 설정한 品質基準이나 정부나 업계단체 등이 정한 製品基準에서 벗어난 불량품을 가지고 缺陷이라고 하였다. 이를 표준일탈기준이라고 하며, 주로 제조상의 缺陷判斷의 基準이 되었고, 표준일탈이 있는 경우에는 過失責任主義下에서도 비교적 책임을 인정하기가 쉬웠다. 다만 표준일탈기준은 제조자의 품질기준이 높으면 책임이 중하게 되고 낮으면 가볍게 된다는 이상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 또 증거 제시절차(사실발견절차)가 인정되어있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는 적용에 문제가 있다.

ii) 소비자기대기준

製造物責任의 法理가 인찍부터 정착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통상 缺陷이란 「불상당하게 사용자나 소비자 및 그의 재산에 대한 위험한 상태(unreasonably dangerous to th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이며, 소비자의 기대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缺陷이라고 한다.²⁶⁾

製造物責任은 당연한 말이지만 소비자의 관점에 서서 製品의 缺陷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製造物責任의 本質은 소비자주의의 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자의 입장에 서서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주의만 없으면 책임을 면한다는 過失責任主義와는 그 철학적 기반을 달리한다. 다만 문제는 「통상의 소비자」라는 개념의 애매성이며, 실제 문제로 되면 판단자의 주관이 다분히 포함될 우려가 있어 그 기준의 과학화, 객관화가 요망된다.

iii) 위험효용기준

製造物事故는 製品의 효용을 향유하는 피해자의 행위에 의해서 생기므로 당해 활동의 효용과 비용 즉 당해 製品의 효용과 위험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즉 製造物責任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위험효용기준도 고려되어야 한다. 웨이드(John W. Wade)교수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7개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 ① 製品의 유익성과 필요성
- ② 損害發生의 개연성과 손해의 정도
- ③ 必要性을 충족시키며 안전한 대체품의 가능성
- ④ 製造者의 위험회피능력
- ⑤ 消費者의 위험방지능력
- ⑥ 危險에 대한 소비자의 예비능력
- ⑦ 製造者 의한 손실분산의 가능성

(다) 입법례 및 우리나라 판례

유럽 공동체의 製造物責任法指針²⁷⁾에서는 '缺陷'이란 정당하게 기대되는 安全性을 갖지 못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日本 製造物責任法은 「"缺陷"이란 당해 製造物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製造物을 인도한 시기, 기타 당해 製造物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製造物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缺하고 있는 것을

26) 미국 리스데이트먼트 §402 주석 (i)에서 보면 부당하게 위험하다란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통상의 소비자가 製品의 매수시에 기대하는 범위를 넘는 위험이라고 설명한다.

27) 梁彰洙, "製造物責任", 『司法發展研究課程教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pp. 15-17.

말한다”고 규정한다.

최근의 대법원판결은²⁸⁾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製品의 構造, 品質, 性能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製品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내구성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缺陷 내지 瑕疵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契約상의 賠償義務 이외에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義務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을 소비자기대 기준설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다.²⁹⁾

4. 立證責任 - 缺陷과 因果關係의 推定

(가) 序言

消費者가 缺陷의 存在與否 및 缺陷과 損害의 因果關係를 입증하는 것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當該 損害의 유발에 이르기까지는 製造者의 危險領域 이외의 원인이 介入할 여지가 많고 대개의 경우 이 양자는 상승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製造物 責任에 있어서 因果關係의 確定은 원칙적으로 개별적 因果關係의 입증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科學論爭에 빠지기 쉬워 原告에게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缺陷과 因果關係의 입증에 관하여 상당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EC지침과 같이 缺陷,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한, 현행제도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

(나) 缺陷의 推定

통상인이 통상 예상되는 방법에 따라 製造物을 사용·보존·폐기한 경우에 통상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원고가 통상 예상된 사용을 한 것과 손해의 발생만을 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製造物이 시장에 출하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製造物의 재질 등에 변화가 일어나 缺陷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내에는 당연히 통상의 사용에 견딜만한 품질을 구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 내에 발생할 사고 등에 대해서는 유통에 두어진 당초부터 즉 시장에 출하된 때부터 缺陷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든 大法院 判例는 「변류기의 점진적인 절연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연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 내구연한에 기존사용기간을 초과한다면 내구연한 전에 발생한 절연파괴는 위와 같은 절연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缺陷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법이 製品安全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에 적합 혹은 부적합은 缺陷有無 판단의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들 규제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缺陷으로 추정된다고 본다. 다만 이들 법규가 정하는 기준은 단지 刑罰, 過怠料, 行政處分 등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일 뿐이므로 그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하여 製造者의 安全義務와 責任이 免除되는 것은 아니다.

(다) 因果關係의 推定

製造物에 缺陷이 있는가 여부와 缺陷과 損害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는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不法行爲訴訟에 있어서 因果關係의 立證은 원칙적으로 被害者(原告)가 하여야

28) 대법원 1992. 11. 24선고, 92다 18139판결 (법원공보 936호 (1993. 1. 15), 58면 이하).

29) 韓瑋熙, 製造物責任, 법률신문, 1993. 8. 23자, 12면.

하나 原告의 立證을 완화하는 여러 방법이 주장되고 있다.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因果關係의 입증은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상당한 정도의 蓋然性만 立證하면 충분하며 피고는 因果關係의 不存在의 反證을 한 경우에만 책임을 면한다고 하는 소위 公害訴訟에 있어서의 因果關係에 관한 蓋然性說이 援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蓋然性說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법리인 疫學的 因果關係論이 製造物責任訴訟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에 援用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疫學上의 因果關係의 有無는 ① 因子가 發病의 일정기간 전에 작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② 그 인자의 작용하는 정도가 顯著할수록 질병의 罹患率이 높아질 것, 곧 '量과 效果의 關係'(dose and effect relationship)가 존재할 것이며, ③ 또 인자가 제거되거나 적어질수록 질병의 罹患率 또는 정도가 저하한다는 이른바 '消去의 原則'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④ 그 인자가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메카니즘이 생물학적으로 모순없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느냐에 의해 판단된다고 한다. 그래서 예컨대 藥禍事件에 있어서 A 藥品의 發賣후에 일정한 B 症狀群을 나타내는 患者가 발생하고, 消費量의 增減과 患者數의 增減이 相關關係를 가지며, 당해 藥品의 回收 등에 의하여 患者數도 쪼이 되든가 또는 일정수 이하로 격감하며 동물실험에 의하여 A 藥品이 B 症狀를 일으킬 可能性이 있을 것이 確認되면, 일반적으로 A 藥品과 B 症狀를 갖는 疾病과는 因果關係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³⁰⁾

製造物責任法의 立法時에도 이러한 성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1982년 법안에서는 「製造物에 缺陷이 있는 경우에 그 缺陷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그 製造物의 缺陷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라) 提案

法 制定時 다음과 같은 추정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製造物을 통상 예견되는 방법으로 사용, 보존,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製造物에 缺陷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손해가 그 缺陷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한다.」

5. 製造物責任의 主體

製造物責任을 지는 자는 缺陷있는 製造物의 生産, 流通에 關여한 자이다.

EC지침 제 3조는 責任者의 範圍를 대략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製造者에는 最終 生産物의 製造者 뿐만 아니라 部品의 生産者, 原料의 生産者도 포함되며 製造者로 행세하는 자도 포함된다.

缺陷商品의 販賣者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製造者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단계의 供給者가 製造者로서 책임진다. 또 輸入業者도 책임진다.」

결국 製造物責任을 지는자는 일차적으로 제조업자나 보충적으로 유통업자도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는 製造業者와 流通業者는 다음과 같다.

- 1) 製造業者는 完成品의 製造者 또는 그 完成品의 製造者가 下請을 받아 제조한 경우에는 商標權者가 된다. 部品製造者나 原料提供者도 製造物의 缺陷이 그 부품이나 원료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責任을 진다.
- 2) 流通業者에는 都賣商, 小賣商, 輸入業者 등이 포함된다.

30) 黃迪仁,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過失과 因果關係의 推定", 韓獨法學, 제8호(1989), PP. 143-144.

6. 連帶責任

오늘날 상품의 생산에는 원료공급자, 부품제조자, 조립생산자 등 다수의 제조업자가 관여하고 있으나 소비자는 상품의 缺陷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는지, 누가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를 아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책임추잡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 제760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缺陷商品의 생산·판매에 관여한 모든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소비자는 그 중 어느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연대책임의 원칙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소비자는 소송에 있어서 被告 特定の 곤란이 제거된다. EC지침 제5조는 이를 명정한다.

7. 賠償額의 增減

(가) 懲罰的 賠償制度 혹은 2·3 배 賠償制度의 導入

행위자의 주관적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책임원리에 대하여는 책임법이 더 이상 손해억제 기능이나 징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가해행위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특히 보험과 결부되는 경우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는 것도 아니나 일리있는 비판이라고 보며, 無過失責任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징벌적 배상이란 악성이 강한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전보적 배상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배상이다. 징벌적 배상은 그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가해자에게의 징벌과 이를 통해 不法行爲의 再發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징벌적 배상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가해행위의 악의성이라고 하는 주관(행위지향)을 문제로 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가 주장하는 無過失責任은 製造者의 故意·過失이라고 하는 주관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製品自體에 缺陷이 있는가 없는가(物志向)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점에서 양자는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극히 일리 있는 비판이나 현실문제에 있어서는 法理論上의 首尾一貫보다는 피해자보호의 강화라고 하는 실제적인 결과의 타당성을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징벌적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제조자로서는 안전대책비용보다 소수의 피해자에게 실손해를 지급하는 쪽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製品의 安全性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할지 모른다. 다만 이러한 징벌적 배상을 안이하게 인정하거나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에 치우쳐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 기업을 倒産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일정한 요건과 한도의 설정이 필요하다.

(1) 부과요건

먼저 부과요건으로서 제조자의 「악의적인, 의도적인」 경우는 물론 무모한 또는 터무니 없는 무시 내지 무관심에 의한 製造物의 缺陷發生의 경우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주에 따라서는 중대한 過失(gross negligence)로는 부족하다는 곳도 있으나 우리 판례는³¹⁾ 중대한 過失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 보고 있으므로 우리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는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3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 다 418 판결.

(2) 責任限度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해서는 ① 형사법에 있어서와 같은 보호조치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손해의 전보라는 민사법의 목적과도 모순되며, ② 원고에게 뜻밖의 횡재를 안겨주고, ③ 책임의 유무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없으며, ④ 유사행위 제발억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중 ①②④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지만 징벌적 배상제도는 미국의 민사법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제도이며, 이에 대한 폐지의 주장은 거의 들을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 건수의 급증과 그 인용액의 고액화가 문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③에 대한 비판은 이 제도의 도입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해결방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법과 전보적 배상액과의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요구하는 합리적 관계기준 내지 비율기준이다. 후자가 전자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며, 그 한도는 실손해액의 2배로 할 것을 권고한다.³²⁾

(나) 過失相計의 特則

過失相計를 민법의 원칙대로 인정하면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약간의 過失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 피해자는 완전한 구제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상품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으로부터는 다소의 過失은 불문에 붙이고,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다) 開發危險과 賠償額의 減額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듯 無過失責任의 原則을 개발과정의 缺陷에까지 확대하면 책임이 엄격하게 되므로 개별기업이나 당해 업체는 보험이나 구제기금 등을 마련하여 그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製品의 開發過程에서 비관할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개발 후에도 위험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기업책임의 완화를 통해 기업의 개발정신이 감퇴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기업의 위험방지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製品發賣前의 안전성 검사와 품질검사, 製品發賣後의 製品의 缺陷 여부에 대한 관찰,³³⁾ 缺陷에 대한 정보 제공과 회수 및 보수노력 등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감액하여야 할 것이다.

8. 事前免責의 禁止

피해자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이 사전면책조항이나 제한조항에 의하여 면책 또는 제한되게 된다면 製造物責任法이 의도하는 소비자보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EC지침은 물론 EC의 1976년안, 1979년안, CE조약, 1975년의 日本要綱試案 등은 모두 사전면책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 판례도 대체로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컨대 Henningsen사건³⁴⁾에서는 보증서에 포함되어 있는 免責約款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무

32) 이러한 범위내에서 배상액이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서는, 이상정/박인섭, 前掲書, 90면 참조.

33) 최근에는 汚物除去上의 缺陷(Abfallbeseitigungsfehler), 製品觀察上의 缺陷(Produktbeobachtungsfehler)도 논의되고 있다. 金亨培, “製造物 責任에서의 缺陷의 概念과 責任歸屬”, 『損害賠償法の 諸問題』(誠軒黃迪仁博士華甲記念), pp. 406-411. 사후 관찰의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하여 배상액의 감액을 인정하면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크게 가혹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34) Henningsen v. Bloomfield Motors, Inc., 161 A.2d 69, N.J. Supreme Court 1960: 원고의 남편이 자동차

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앞으로 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9. 消滅時效 및 除斥期間

시효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製造物의 缺陷에 의해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문제이나 민법 제766조나 EC지침 제11조, 미국 판례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한편 製造者의 法定責任期間(statute of repose)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도 커다란 문제이나 민법 제766조나 EC지침 제11조, 미국 통일모델법 제110조 등에 비추어 10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몇 십년이 경과되었다라도 당해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한 피해인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생각못할 바 아니나 제조자의 無過失責任, 특히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製造物責任法 制定의 基本方向은 기업자부담을 보험에 의해 분산시킨다는 취에 주안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조자책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製品에 따라서는 이 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는 기업책임과는 별도의 사회적 책임 내지는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10. 民法의 適用

製造物責任法은 製造物의 缺陷에 대해서 제조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이며,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현행 민법을 수정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第 4 節 맺음말

製造物責任을 民法의 過失責任의 原則 아래서 過失의 推定, 注意義務의 嚴格化, 因果關係의 立證責任의 輕減 등의 법기술로 해결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므로, 현대 산업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요망된다.

그 입법에서는 세계적인 경향에 맞추어, 無過失責任의 體系를 도입하되 생산자의 책임한계를 적절히 수립하고, 책임주체간의 법률 관계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 밖에 缺陷의 類型에 따른 판단 기준, 면책약관에 의한 책임의 제한·배제금지, 징벌적 배상, 제3자소송인입제도, 집단소송제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당연한 말 하나를 강조하기로 한다. 그것은 製造物責任은 缺陷責任이라는 것이다. 製造物責任法의 제1의 특징은 製造者의 過失 有無를 묻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缺陷

를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였다. 契約書의 保證條項에는 「제조업자와 소매업자는 직접 구입자에 대해서만 부품교환을 내용으로하는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직접 구입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목시의 보증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증책임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법원은 「대량판매를 전제로 하는 근대적 마케팅하에서는 최종 소비자의 손에 상품이 넘겨질 때까지 그 상품에 부수해서 목시적 보증책임이 존속한다」고 보아 이러한 제한 조항을 무효화하였다.

만 있다면 제조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過失의 有無를 묻지 않고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製造物責任은 無過失責任이라고 말해지나 이러한 소극적인 개념보다는 오히려 缺陷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 無過失責任이라고 하면 마치 製品事故만 일어나면 무조건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오해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製造物責任法을 새로이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러한 절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製造物責任은 缺陷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缺陷責任(defect liability)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도 자사 製品の 缺陷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過失 有無를 따지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製造物責任法의 制定은 우리의 법현실과 결코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참 고 문 헌

(우리나라)

- 康昌景/崔秉祿/朴熙主, 製造物責任法의 制定에 관한 研究, 소비자보호원, 1994.
- 郭潤直, 債權總論, 박영사, 1994.
- , 債權各論, 박영사, 1995.
- 權英俊, “缺陷製造物의 民事責任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 “缺陷製造物의 民事責任研究”, 財産法研究, 한국재산법학회, 1994.
- 金選二, “製造物責任에 관한 약간의 考察”,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金顯泰, “製造物 責任에 관한 研究”, 사회과학 논문집(7집), 연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75.
- 金亨培, “製造物責任에서의 缺陷의 概念과 責任歸屬”, (誠軒黃迪仁博士華甲記念) 「損害賠償法의 諸問題」, 박영사, 1990.
- 孫珠瓊, “製造物責任保險”, 韓獨法學 제8호, 韓獨法律學會, 1989.
- 申有哲, “缺陷있는 物品의 生産者의 責任”,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梁彰洙, “製造物責任”, 司法發展研究課程教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 이상정/朴仁燮, “製造物 責任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書89-03, 韓國消費者保護院, 1989.
- 이상정, “製造物責任法의 制定 方向”, (誠軒黃迪仁博士華甲記念) 「損害賠償法의 諸問題」, 박영사, 1990.
- 李英俊, “韓國 判例에 있어서의 製造物責任”, 韓獨法學 제 8호, 韓獨法律學會, 1989.
- 李銀榮, 債權各論, 박영사, 1989.
- 李致泳, “製造物責任을 둘러싼 國際的 動向과 主要論點”, 소비생활연구 제10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2. 12.
- , “製造物責任立法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2.
- 池益相, “危險責任”,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片智媛, “製造物 責任”,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韓國法學教授會 編, 法과 消費者 保護, 삼영사, 1980.
- 韓瑋熙, “製造物責任에 관한 考察”, 司法行政, 1977. 8.
- , “製造物責任의 立法 動向과 그 適用法理”, 이영환교수화갑기념 재산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90.
- , “스웨덴 製造物責任法”, (誠軒黃迪仁博士華甲記念) 「損害賠償法의 諸問題」, 박영

사, 1990

- , “美國 製造物責任法理의 最近 動向, 민사법학 제11·12호, 사법행정학회, 1995.
 洪天龍, 消費者 被害救濟論 - 製造物責任을 중심으로 -, 삼영사, 1980.
 ——, “製造物責任의 價値基準으로서의 缺陷의 概念”, 『韓國民事法學의 現代的 展開』,
 박영사, 1991
 黃迪仁, “製造物 責任에 있어서의 過失과 因果關係의 推定”, 韓獨法學 제8호, 韓獨法律學
 會, 1989.
 ——, 이상정편, 消費者保護法, 대학출판사, 1993.

(외국문헌)

-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Torts(2nd)*,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65
 Jerry J. Phillips, *Products Liability in a Nutshell(3d)*, West Pub. Co., 1988.
 David A. Fisher 外, *Products Liability-Cases and Materials*, West Pub. Co., 1988.
 Harry Duintjer Tebbens, *International Products Liability*, Sijthoff & Noordhoff
 International Publishers, 1980.
 Christopher J.S. Hodges (ed), *Product Liability - European laws and Practice*, Sweet &
 Maxwell, 1993.
 Patrick Kelly/Rebecca Attree, *European Product Liability*, Butterworths, 1992.
 Taschner/Frietsch, *Produkthaftungsgesetz und EG-Produkthaftungsrichtlinie (Kommentar)*,
 C. H. Beck, 1990.
 安田總合研究所, 製造物責任, 有斐閣, 1989
 安田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PL=製造物責任, 講談社, 1990
 原 早苗, 欠陥商品と企業責任, 岩波書店, 1992
 館幸嗣, 製造物責任研究序說, 尙學社, 1985
 加藤一郎, 竹內昭夫 編, 商品の缺陷(消費者法講座2卷), 1985
 唄 孝一, 有泉 亨 編, 醫療事故・製造物責任(現代損害賠償法講座4), 日本評論社, 1974
 山口正夫, 歐米の製造物責任, 日本經濟評論社, 1987
 川井 健, 欠陥商品と企業責任, 日本經濟新聞社, 1980
 大羽宏一 編, アメリカの賠償責任保險危機とその解決への道, 保險毎日新聞社, 1987
 經濟企劃廳國民生活局消費者行政第1課 編, 製造物責任と賠償負擔, 1980
 _____, 製造物責任と賠償履行確保, 1988
 _____, 製造物責任をめぐる最新の動き, 1988
 _____, 逐條解說 製造物責任法, 商事法務研究會, 1994.
 加藤雅信 編著, 製造物責任法總覽, 商事法務研究會, 1994.
 川口康裕, 米國の製造物責任制度について, *ジュリスト* 1035號, 1993. 12. 1.
 ——, 製造物責任 성립, *ジュリスト* 1051號, 1994. 9. 1.
 星野英一, 製造物責任制度ができるまで, *ジュリスト* 1051號, 1994. 9. 1.
 瀨川信久, 缺陷·開發危險の抗辯と製造物責任の特質, *ジュリスト* 1051號, 1994. 9. 1.
 松本恒雄, 製造物の意義と範圍, *ジュリスト* 1051號, 1994. 9. 1.
 春日偉知郎, 證明責任, *ジュリスト* 1051號, 1994. 9. 1.
 太田勝造, 製造物被害の救濟システム, *ジュリスト* 1051號, 1994. 9. 1.
 浜田宏一, 製造物責任新法によせて, *ジュリスト* 1056號, 1994. 11. 15.